

In brief

A look at current financial reporting issues

IASB 의 IAS 7 ‘현금흐름표’ 기준서 개정 발표

February 2016

Issue

2016년 1월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채의 변동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의 공시 요구사항을 IAS 7 ‘현금흐름표’ 기준서에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IASB가 재무제표의 공시를 개선하기 위해 진행중인 ‘공시개선(“Disclosure Initiative”)’ 과제의 일부입니다. 개정내용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Impact

무엇을 추가 공시해야 합니까?

기업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채의 변동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 차입의 실행 또는 상환 등의 현금흐름과;
- 사업의 취득, 처분과 미실현 외화환산차이 등의 비현금거래에 따른 변동.

추가 공시가 요구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공시는 차입금에 대해서만 요구됩니까?

아니요. 현행 IFRS에는 차입금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공시가 요구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IASB는 미래 발생할 현금흐름을 포함하여 현금흐름이 현금흐름표 상 재무활동으로 분류되는 부채의 변동을 공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관리와 관련된 금융자산을 공시에 포함해야 합니까?

네. 기업은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포함되는 자산(예를 들어, 재무활동 부채에 대한 위험회피와 관련된 자산)의 변동을 새로운 공시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른 항목의 변동을 공시에 포함할 수 있습니까?

네. 기업이 그러한 공시가 위 공시 요구사항의 목적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경우 다른 항목의 변동도 공시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변동이나 퇴직연금부채,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되는 이자지급액 등을 포함할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공시는 재무활동으로 발생하는 부채의 공시와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시에 특정 형식이 요구됩니까?

아니요. 개정 기준서는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부채의 재무상태표 상 기초와 기말 잔액 간의 차이조정이 공시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지만 특정한 양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차이조정을 공시한다면 조정항목들은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와 연결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개정 기준서는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합니다. 조기적용은 허용합니다.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 시 전기 비교정보의 공시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Insight

기준서의 개정은 투자자들이 기업의 차입금 변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IFRS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모든 기업은 영향을 받을 것이지만, 요구되는 정보는 이미 이용 가능한 정보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자들은 재무활동으로 발생하는 부채의 변동을 설명하기 위한 추가정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